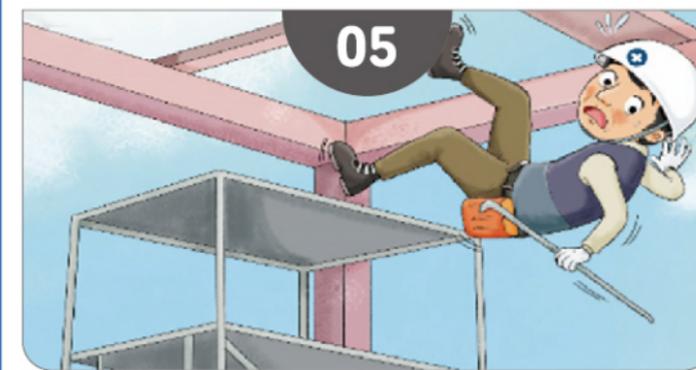


안전보건공단 연락처

기관명	대표전화	기관명	대표전화
서울지역본부	02-6711-2800	인천지역본부	032-5100-500
서울북부지사	02-3783-8300	경기지역본부	031-259-7149
강원지역본부	033-815-1050	경기북부지사	031-841-4900
강원동부지사	033-820-2580	경기서부지사	031-481-7599
부산지역본부	051-520-0510	경기동부지사	031-785-3300
부산북부출장소	051-319-4385	경기중부지사	032-680-6500
울산지역본부	052-226-0510	대구지역본부	053-609-0500
경남지역본부	055-269-0510	대구서부지사	053-650-6810
경남동부지사	055-371-7500	경남동부지사	055-371-7500
광주지역본부	062-949-8700	경북지역본부	054-478-8000
전북지역본부	063-240-8500	대전세종 지역본부	042-620-5667
전북서부지사	063-460-3600	충북지역본부	043-230-7111
전남동부지사	061-689-4900	충남지역본부	041-570-3400
전남지역본부	061-288-8700		
제주지역본부	064-797-7500		

대표전화 052-7030-500

이동식 비계



철골조립 중 이동식비계에서 추락

발생원인

- 이동식비계의 갑작스런 움직임

예방대책

- 아웃트리거 및 바퀴고정장치 사용

주요 위험요인



작업발판 미설치 | 몸을 내미는 행동

안전한 이동식비계



추락재해예방 개인보호구

안전대 착용 방법



양 다리에 끼우고 들어 올린다. | 양 어깨에 끼운다.



가슴 조임줄을 채운다. | 착용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.

안전대를 부착설비에 체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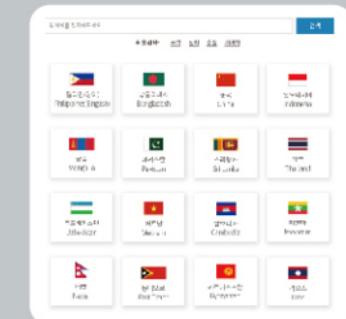
안전모 착용 방법



턱끈을 견고히 고정 | 머리 고정대 조절

외국인자료 활용

안전보건자료실



안전보건앱 다국어회화



- 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
- 자료마당
- 안전보건자료실
- 외국인자료(16개국)

- 플레이스토어 & 앱스토어
- 위기탈출 안전보건 어플 다운로드

언어소통으로 인한
사고사망예방
(13개 언어 1,300문장)

건설현장 추락사망 예방 캠페인



건설 현장 추락 사망
설치하고 착용하면
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안전모 안전대
막을 수 있습니다

7월부터 10월까지, 추락 사망사고 발생 위험 전국 건설현장 대상 분시점검 실시
불량현장 즉시 시정요구 및 미개선시 감독 등 행정집행 예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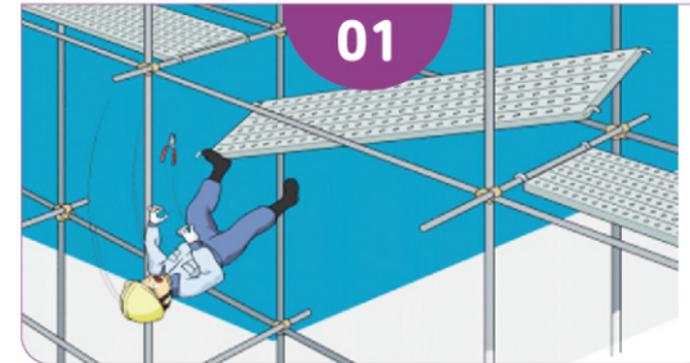
안전은 권리입니다

5대 가시시설물

건설현장 추락포인트 카드북

고용노동부 |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작업발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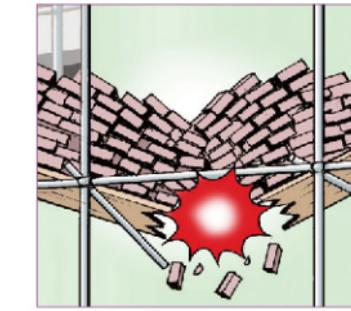


철선작업 중 발판이 뒤집어져 추락

주요 위험요인



작업발판 미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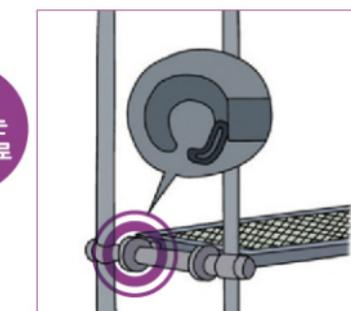


불량 재료 사용

작업발판의 구조



적정한 폭 및 간격



지지물에 고정

발생원인

- 작업발판의 고정상태 불량

예방대책

- 안전한 작업발판의 견고한 설치
- 안전모, 안전대 착용

시스템비계 설치·사용이 안전합니다.

안전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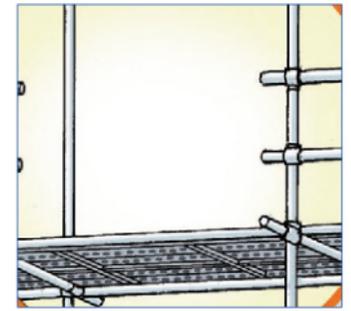


미장작업 중 발을 헛디뎠어 추락

주요 위험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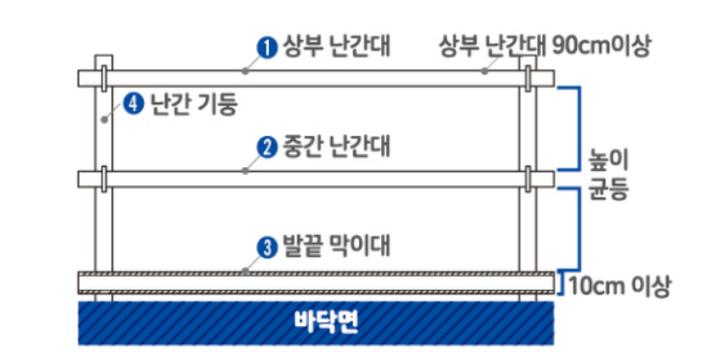


안전난간 설치 불량



안전난간 미설치

안전난간의 구조



발생원인

- 안전난간 미설치

예방대책

- 단부에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
- 안전모, 안전대 착용

개구부 덮개



자재 운반 중 개구부로 추락

주요 위험요인



덮개 설치 불량



안전난간 미설치

안전난간의 구조



견고한 덮개 설치

안전난간 및 경고 표지 설치

발생원인

-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 실시

예방대책

- 개구부 덮개 및 경고 표지 설치

사다리



보안등 설치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

사다리 안전작업 지침



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A형 사다리만 사용 가능



평탄,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


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
높이 2m 이상 시 안전대 착용



1.2m ~ 2m 미만
2인 1조 작업, 최상부 작업금지
2m ~ 3.5m 이하
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
3.5m 초과 시 작업금지

발생원인

- 몸을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

예방대책

- 아웃트리거 설치
-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